

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[\[개정 2013. 3. 23.\]](#)

[\[전문개정 2011. 5. 24.\]](#)

**제9조(여객 운임 · 요금의 신고 등)**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(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, 여객 운송과 관련된 설비 · 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· 요금(이하 "여객 운임 · 요금"이라 한다)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. [\[개정 2013. 3. 23., 2015. 12. 29.\]](#)

②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 ·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(原價)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여객 운임 · 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객에 대한 운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,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· 고시한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[\[개정 2015. 12. 29.\]](#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3. 23.\]](#)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[\[신설 2020. 12. 22.\]](#)

⑤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 운임 · 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, 관계 역 · 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5. 12. 29., 2020. 12. 22.\]](#)

[\[전문개정 2011. 5. 24.\]](#)

[\[제목개정 2015. 12. 29.\]](#)

**제9조(여객 운임 · 요금의 신고 등)**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(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, 여객 운송과 관련된 설비 · 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· 요금(이하 "여객 운임 · 요금"이라 한다)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. [\[개정 2013. 3. 23., 2015. 12. 29.\]](#)

②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 ·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(原價)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여객 운임 · 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객에 대한 운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,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· 고시한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[\[개정 2015. 12. 29.\]](#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3. 23., 2025. 10. 1.\]](#)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[\[신설 2020. 12. 22.\]](#)

⑤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 운임 · 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, 관계 역 · 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5. 12. 29., 2020. 12. 22.\]](#)

[\[전문개정 2011. 5. 24.\]](#)

[\[제목개정 2015. 12. 29.\]](#)

[\[시행일: 2026. 1. 2.\]](#) 제9조

**제9조의2(여객 운임 · 요금의 감면)** ①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,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,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여객 운임 ·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[\[개정 2015. 12. 29.\]](#)

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 ·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, 관계 역 · 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[\[개정 2015. 12. 29.\]](#)

[\[전문개정 2011. 5. 24.\]](#)

[\[제목개정 2015. 12. 29.\]](#)